IT융합대학원 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아주대학교 IT융합대학원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기적 결합으로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함은 물론 모교 및 본회 발전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 3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회원 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제반사업

학술활동 및 회원명부 동문지 발송

취미활동 및 여가활동을 통한 결속력 강화 및 연대감 조성사업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등

<제3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의 기본적 자격으로 아주대학교 IT 융합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한 자로 동문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준회원의 경우 아주대학교 IT 융합대학원을 졸업 또는 수료한 한 자로 동문회비를 미납부한 자와 아주대학교 IT 융합대학원을 입학한자에 한하여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공학대학원 정보전자공학과 및 전자공학 대학원 학연산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 본 동문회 가입을 원하는 경우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명예회원의 경우 아주대학교 IT 융합대학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이에 한하여 명예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은 발언권을 갖는다.

명예회원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본회 회원은 회칙과 본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회비는 연회비로 납부할 수 있다.

회원이 희망할 경우 일시금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의무

<제4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부회장 : 제한없음(졸업 기수별로 졸업자중 1명씩 선임)

재무 : 1명 이상

감사 : 2명 이상

기획 : 2명 이상

자문위원 : 전대 동문회장, 교수님

제9조(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중 추천을 받아 정기모임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재무 및 기획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회장 및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모임이 늦어진 경우에는 다음 모임에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행당 졸업 기수의 대표자로서 회장과 임원과 협업을 통한 동문에 발전에 기여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각급회의의 의장이 될 수 있으며, 본회의 전반적인 행사 및 모임을 주관하며, 기본적인 연락을 통해 회원 간의 의사 및 정보 소통을 담당한다.

재무는 본회의 회비수납과 본회와 관련된 수입 지출 등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비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각 모임 시 회원에게 통보한다.

감사는 본 회의 회계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다.

제12조(자문위원)

본회 전대 회장과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장 모임>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모임과 비정기 모임으로 한다.

정기모임을 연 2회 개최한다.

비정기 모임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정회원 정원의 1/3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의결 및 추인)

본회의 정기모임 및 비정기 모임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전체 본 회원(정회원)으로 한다.

총회 시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임원회에서 결의한 아래사항을 추인한다.

회장 및 감사 선출에 대한 추인

회칙 재·개정에 대한 추인

총본회 예산심의 및 결산에 대한 추인

기타 총본회 발전을 위한 임원회결의안 추인 등

제15조(임원회)

본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임원회의 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임원의 선임 및 보선

예산 및 결산안 심의

<제6장 재원 및 지출>

제17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년도는 전년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과 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회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회비 및 특별회비는 본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액을 전회원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장 : 300,000원

- 자문위원, 부회장단, 임원단 : 100,000원

- 정회원 : 100,000원

본회 정회원은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 전까지 정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지출)

본회의 운영을 위한 모든 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본 IT융합대학원 및 원우회 행사 지원에 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

경조사비용의 지출은 부칙에 의거하여 지출하도록 한다.

<제7장 회칙>

제19조(회칙)

본회의 회칙은 회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 회원은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견은 누구나 건의가 가능하다.

회칙 개정의견은 정기모임 및 비정기 모임에서 동의와 재청에 의한 안건으로 상정한다.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1.

경조사비 지출 및 근조기는 정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하고, 1명 회원 당 1년에 1회 이하로 그 범위를 제한하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및 회원의 직계존비속 조사 : 금200,000원

정회원 직계존비속의 경사 : 금 200,000원

위 사항 이외에 경중을 임원들의 판단하여 화환을 추가할 수 있다.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경사는 각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추후에 회칙의 개정을 통해 추가한다.

경사와 관련된 사항에는 참석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는 필히 참석하도록 한다.

동문회 근조기는 정회원에 한하여 사용하며, 근조기의 제작, 보관, 배송비 등에 관한 제반 비용은 동문회비로 지출한다.